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호

제출년월일 2025. 7. .
제 출 자 유영숙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겸직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(안 제4조)

❍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기준 추가 (안 제8조 및 안 별표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
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(겸직 등 금지), 제44조(의원의 의무),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
나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5. 7. . ~ 2025. 7. .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부서협의 : 해당없음

2)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품위유지, 청렴의무, 회피의무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그 밖의 위반 행위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[별표2]

< 징계기준 >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1. 겸직신고 위반	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겸직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36조제2항 위반)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2. 영리거래 금지 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○ 영리거래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계약체결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3. 품위유지	○ 음주운전	
	- 면허취소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- 면허정지	경고, 공개사과
	○ 범법행위	
	- 금고 미만 확정판결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	
	-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	경고, 공개사과
	○ 성폭력, 성희롱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4. 청렴의무	○ 탈세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병역 면탈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금품수수	
	-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5. 회피의무	○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	
6.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○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	공개사과
7. 그 밖의 위반 행위	○ 공유물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사적 노무 요구, 국내외 활동제한, 알선·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겸직신고)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	**제4조(겸직신고)**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제8조(징계 등)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. 1. ~ 5. (생략) <신 설>	**제8조(징계 등)**-----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품위유지, 청렴의무, 회피의무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그 밖의 위반행위
[별표 2] <징계기준>	[별표 2] <징계기준>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1. 겸직신고 위반	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 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경고
	○ 겸직 허위신고 - 미신고,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○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36조제2항 위반)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2. 영리거래 금지 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○ 영리거래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----------	----------	-----
----------	----------	-----
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계약체결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관리인 겸직 사임 권고 불이행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<신 설>

	○ 음주운전	
	- 면허취소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- 면허정지	경고, 공개사과
	○ 범법행위	
	- 금고 미만 확정판결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3. 품위유지	○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	
	-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	경고, 공개사과
	○ 성폭력, 성희롱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4. 청렴의무	○ 탈세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병역 면탈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
	○ 금품수수	
	-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5. 회피의무	○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	경고,

	등 의무 위반	
	○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	공개사과
6.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○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	공개사과
7. 그 밖의 위반 행위	○ 공유물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
	○ 사적 노무 요구, 국내외 활동제한, 알선·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붙임 1 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3조(겸직 등 금지)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(職)을 겸할 수 없다.

1. 국회의원, 다른 지방의회의원
2. 헌법재판소 재판관,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(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)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한국방송공사,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)의 임직원
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
6.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(이들 조합 · 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)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 · 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
7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
8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
9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

②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.

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 · 단체 및 그 기관 · 단체가 설립 ·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)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· 출연(재출자 · 재출연을 포함한다)한 기관 · 단체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· 단체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,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· 단체

4.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)의 임직원

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1.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

2.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

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4조(의원의 의무)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,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·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,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· 단체및 그 기관 · 단체가 설립 ·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붙임 2 현행 자치법규

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1. 13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89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
경기도 김포시(의회사무국), 031-980-252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(이하 '의원'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1.4, 2009.10.12)

제2조(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)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3조(의원의 의무)

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겸직신고)

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31.>

② 의원이「지방자치법」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<개정 2021.12.31.>

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31.>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<신설 2021.12.31.>
2.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「지방자치법」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<신설 2021.12.31.>

[본조신설 2009.10.12][전문개정 2016.3.9]

제5조(영리행위의 제한)

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「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31.]

[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<2021.12.31.>]

제6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

① 의원은 「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,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3.9]

[제5조에서 이동 <2021.12.31.>]

제7조(겸직금지)

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외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김포시가 출자・출연(재출자・재출연을 포함)한 기관・단체
2.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・단체
3. 김포시로부터 운영비・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・단체
4.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)의 임직원

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31.]

제8조(징계 등)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.<개정 2021.12.31.>

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2.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<개정 2021.12.31.>
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4.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<개정 2021.12.31.>
5.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
6. [제7조에서 이동<2021.12.31.>

[본조신설 2016.3.9]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「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>(2008. 1. 4 조례 제69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.10.12 조례 제81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3.9 조례 제12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89호, 2021.12.31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